

# 재단 정관

제정	2002. 3.11	정관	제1호
개정	2005. 5.18	정관	제2호
개정	2006. 3.28	정관	제3호
개정	2006.11.30	정관	제4호
개정	2007.12.24	정관	제5호
개정	2011. 4.26	정관	제6호
개정	2014. 3.26	정관	제7호
개정	2014.12.19	정관	제8호
개정	2015. 5.20	정관	제9호
개정	2015. 11. 9	정관	제10호
개정	2016. 3.29	정관	제11호
개정	2017. 3.16	정관	제12호
개정	2018.12.20	정관	제13호
개정	2020. 6.17	정관	제14호
개정	2023.10.17	정관	제15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12.24>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안동시 축제장길 20에 둔다.

<개정 2005.5.18, 2007.12.24, 2011.04.26, 2014.12.19>

**제3조(목적)** 법인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소년들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2014.3.26>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12.24, 2014.3.26>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연수
3.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봉사활동의 지원
4.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청소년복지 ·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26>
5. 기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5.20>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② 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4>

**제6조(사용료 및 시설운영)** 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② 법인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신설 2007.12.24>

③ 법인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7.12.24>

##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12.24>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신설 2020. 6. 17>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면하고, 그 외의 임원은 청소년육성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 선임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6.11.30, 2007.12.24, 2014.3.26, 2014.12.19, 2015.11.9, 2016.3.29, 2020. 6. 17>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실·원·국장

<개정 2006.11.30, 2011.4.26, 2016.3.29>

3. 경상북도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실·원·국장

<개정 2006.11.30, 2014.3.26, 2015.11.9, 2016.3.29, 2020. 6. 17>

4. 삭제 <2011.4.26>

5.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7.12.24, 2020. 6. 17>

6.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신설 2005.5.18>, <개정 2006.3.28, 2007.12.24, 2014.3.26, 2014.12.19, 2020. 6. 17>

7. 삭제 <2016.3.29>

③ 삭제 <2020. 6. 17>

④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또는 세무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4.26, 2014.3.26>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4>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 등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18, 2006.3.28, 2007.12.24, 2011.4.26, 2014.3.26, 2014.12.19., 2017.3.16., 2020. 6. 17>

② 당연직 임원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결원이 된 때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개정 2007.12.24, 2011.4.26>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이 3년(감사는 2년)을 기산한다. <개정 2018.12.20.>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3년을 기산한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0. 6. 17>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17>

② 대표이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 6. 17>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24>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07.12.24>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직무대행)** ①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법인 사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법인 사무부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5.5.18, 2007.12.24, 2014.3.26., 2014.12.19., 2020. 6. 17>

② 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도정 업무수행상 부득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연직 이사중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실·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실·원·국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상북도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실·원·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7.12.24>, <개정 2011.4.26, 2014.3.26., 2015.11.9., 2020. 6. 17>

## 제3장 이사회

**제14조(구성)**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12.24>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6. 17>

**제1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2.24>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4>
8.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7>

**제2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4>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07.12.24>

##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4>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4>

제23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 <개정 2007.12.24>
3. 정부 및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 <개정 2007.12.24>
4. 기타 수입금 <개정 2007.12.24>

제24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7.12.24>



**제26조(예산편성)**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3.26>

**제27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3.26>

**제28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7.12.24>

**제29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제30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대여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개정 2007.12.24>

2.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개정 2007.12.24>

3.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 제5장 사무기구

**제33조(사무기구)** ① 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② 삭제 <개정 2020. 6. 17.>

③ 사무기구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4.3.26.> <개정 2020. 6. 17>

④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4>, <개정 2014.3.26., 2020. 6. 17>

## 제6장 대표이사의 선임 <신설 2020. 6. 17.>

**제33조의2(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를 임용할 때에는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자를 공모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되, 공모의 객관성을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인 이상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된 1인을 임용 제청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육성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사장을 포함한다)
2.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3.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③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은 임기만료 등 대표이사를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한다.
2. 위원회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공모는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그 공모를 의뢰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7]

## 제7장 보칙 <개정 2020. 6. 17.>

**제34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 귀속한다. <개정 2007.12.24., 2023.10.17.>

**제34조의2(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목적의 달성 불가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경상복도의 요청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3.10.17.>

**제35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4>

**제36조 삭제** <2014.3.26.>

**제3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4., 2020. 6. 17>

1.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7>
2. 임직원의 선임·채용, 승진 및 면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7>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7>
4. 재산·회계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05. 5.18>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8>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3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4.26>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19>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9>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29>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16>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33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이 그 임기 만료일인 2020년 12월 17일까지 대행한다.

부 칙 <2023.10.17>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설립자 기명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경 상 북 도	행정부지사	김 주 섭	
경 상 북 도	기획관리실장	최 윤 섭	
경 상 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석 창 순	
경상북도의회	산업관광위원장	이 천 우	
경상북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이 병 렬	
김 천 시	부 시 장	이 병 우	
경상북도청소년센터	이 사 장	김 혜 순	
구미시상공회의소	회 장	박 동 식	
신애의료재단(김천)	이 사 장	정 용 현	
송암교육재단(영주)	이 사	황 윤 점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회 장	권 시 태	
한국청소년마을 경상북도지부	지 부 장	이 영 진	
경 산 대 학 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소 장	한 상 철	
경상북도4-H연합회	회 장	박 서 용	
경 상 북 도	감 사 관	최 영 조	

[별표]

## 기 본 재 산 목 록

재 산 별 (용도별)	수 량 (평)	평 가 액
출 연 금		300,000,000원



## 사무기구 조직 (제33조제3항 관련)

명 칭 (기능)	위 치	비 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활동)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경상북도아동청소년쉼터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남자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구미시 형곡로 34길 31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53 (제2행정타운)	

## 대표이사 선임 자격기준

자 격 기 준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단을 대표하고, 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li> <li>2. 청소년 업무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li> <li>4. 법조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청소년 업무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li> <li>5.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청소년 및 아동관련 분야의 정교수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6.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li> </ol>	<p>연령제한 없음</p>